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336

제안연월일 : 2023년 5월 3일

제 안 자: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현행 「주민투표법」 규정 내용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관련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하며,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별지 서식의 기재오류 및 누락 사항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민투표법 개정('16.5.29.)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용어를 삭제함(안 제2조제4항).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주민투표법」제5조제1항)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안 제3조).

- 서울시는 행정구역 상 "리"가 없으므로 "통·리·반"을 "통·반"으로 수정함(안 제8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심의사항 중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2항).
- 위원 구성 관련 시장의 자의적인 위원 구성을 배제하기 위해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함(안 제12조제3항).
- 심의회 부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회 의장 직무 대행자를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에서 "부위원장"으로 수정함 (안 제14조제2항).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단서 중 "통·리·반"을 "통·반"으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의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안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안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 ② 심의회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안 제14조의 제목 "(심의회의 운영 등)"을 "(심의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에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안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교부의 경우 주민투표실시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를 교부한다.

안 제20조 중 "법 제13조제2항"을 "제10조 4항 및 법 제13조제2항"

으로 한다.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시행일)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	'인디	H표자증	명서	교부신청	형서	
청구인	성명			생	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신청	[]필요(었음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변경 시	}					
「주민투표법 다.	」 제10조	제1항의	의 규정에 의	리하여 청	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	
		ᆉ	그이 네 ㅠ 키		년 (서명 1	월 일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	<i>₹</i>	구인대표자		(시명 :	또는 달인/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중 특정 구, 동 또는 통·반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일부터 년 월 년 월 일부터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٨	방년월일	j			
경우인대표사	주소							(전화번호:)	
	성명			(서	명 또는	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구립 자	성명			(서대	병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	요?	청권	위 위	임신	고	존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	월일				
정도한테표사	주소								(전화변	<u> </u> 보호 :)
	성명		(서명	또는 '	날인)		생년	월일		
	주소								(전화변	<u> </u> 호 :)
스이키.	기간	년	월	일부	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	성명			(서명	병 또는	날인	!)	생년	월일		
	주소								(전화변	번호:)
	기간	년	월	일부	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구인서명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구 ○○동(○ 책 중 ○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 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 3. ○○구 ○○동(○책 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 의 성명을 기재
-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관련자료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l 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년			l를 신청합니다.	
ठो	신 청 인		(서명 또는 닐	·인)	
	주소 제12조제	정명 주소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년 신 청 인	정명 주소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신 청 인	주소 지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	정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7소 (전화번호: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 작성요령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정안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시장은「주민투표	④ (현행과 같음)	4
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5조제1항에 따		
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u>외국인</u>
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		
여 관련 정보를 제공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
표권) 투표인명부작성	표권)	표권)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		
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u>둔, 19세 이</u>	두고 있	두고 있
<u>상의 외국인으로서 출</u>	<u>고, 18세 이상의 외국</u>	고, 출입국관리 관계
입국관리 관계법령에	인으로서 출입국관리	법령의 규정에 의하
<u>따라</u> 영주의 체류자격	관계법령의 규정에	<u> 혁</u>
을 갖춘 <u>자는</u> 주민투	의하여 외국인	
표권이 있다.	은	
제8조 (서명 및 청구인	_ 드 제8조 (서명 및 청구인	 제8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①	
인서명부에 서명하고		

자 하는 주민은 청구 인서명부에 성명·생 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th>
 설>

 <신</th>
 설>

 <신</th>
 설>

 <신</th>
 설>

② 청구인서명부는 자 치구별로 동으로 <u>구분</u> 하여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u>다음 각 호</u>	
의 사항을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	
을 하는 경우에는 전	
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u>본다.</u>	
<u>1. 성명</u>	
<u>2. 생년월일</u>	
3. 주소 또는 체류지	
<u>4. 서명 연월일</u>	
②	②
<u>구분하</u>	
<u>o</u>	
<u>다만, 법 제16조</u>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통·리·반 단위에서	- <u>통·반</u>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 12조제3항에 따라 열 람 기간 시간 및 장 소를 정하여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자치구별로 주민이 열람할 수 있 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 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 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열람 할 때에는 관계 공무 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 <삭 제> 제3항에 따라 주민투 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작성하여야 한다. 12조제3항의 규정에 음) 의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 청구인서명부(전자 청구인서명부의 경우 에는 그 출력물을 말 하다) ------ 경우에만 원본의 해 당부분만----_____ <삭 제>

열람) ①----- <u>법 제</u> 열람) ① (개정안과 같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열람

할 때에는 관계 공무 원을 참여시켜야 한 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주민투

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 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 의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 의 ·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주민투표청 구심의회(이하 "심의 회"라 한다)를 둔다.

- 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 결정
-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 <신 설>
-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 에 부치는 사항

의회) ① 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 <u>시장</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 1.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1. (개정안과 같음)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 2. (개정안과 같음) 된 유효서명의 확인

<u><</u>삭 제>

- 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 5. (개정안 제4호와 같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음) 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의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공 고하여야 한다.

의회) ① (개정안과 같

3. 주민투표청구요건 의 심사

- 3. 전자투표 · 전자개표 4. (개정안 제3호와 같 음)

② 법 제12조의2제2항 ② 심의회 의장은 행 및 제3항에 따라 심 정1부시장이 되고 부

의회의 의장은 행정1	위원장은 위원 중
부시장이 맡으며, 심	<u>서 호선한다.</u>
의회는 의장 및 부의	
장 각 1명을 포함하	
여 7명 이상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이 경	
우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이 전체위원의 과	
반수가 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	③ (개정안과 같음)
음 각 호의 사람 중 시	
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고, 특정 성별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	
의6을 초과하지 않도	
목 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	1. (개정안과 같음)
<u>무원</u>	
2. 시 의회에서 추천하	2. (개성안과 샅음)
<u>는 시의원</u>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	3 (개저아라 간으)
투표 관련 전문지식	J. (/ 6 d E d /
과 경험이 풍부한 사	
라 3 점이 3 구인 /r 람	
표 4. 그 밖에 시장이 위	<u> <삭 제></u>
촉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	

<u> <신 설></u>

제14조 (심의회 운영) ①	제14조 <u>(심의회의 운영</u>	제14조 <u>(심의회 운영)</u>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u>등)</u> ① 법 제12조의2	(개정안과 같음)
또는 위원 3분의 1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요구하는 경우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	
	<u>한다.</u>	
<u> <신 설></u>	② 의장이 부득이한	②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	<u>부위원</u>
	이 미리 지명한 위원	<u> 장</u>
	이 그 직무를 대행한	
	<u>다.</u>	
<u> <신 설></u>	③ 심의회의 회의는	③ (개정안과 같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이 요청하	
	는 경우에 의장이 소	
②·③ (생 략)	<u>집한다.</u> ④·⑤ (현행 제2항	④·⑤ (개정안과 같
<u>2</u> , <u>3</u> (, g, =1)	및 제3항과 같음)	음)
④ 심의회의 회의에	< 세38 와 실름) <삭 제>	음) (개정안과 같음)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따른 사	<u><삭 제></u>	(개정안과 같음)
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 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5조(처리기간) ① 시 제17조(처리기간) ① -- 제17조(처리기간) ① --장은 청구인대표자로 부터 청구인대표자증 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 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제15조(심의회 간사) 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② 간사는 위원장의 무원 중에서 시장이 의 사무를 처리한다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 제16조(심의회 운영세 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 청구인대표자 증명| 서 교부를 신청받--------청 구인대표자 증명서를

① 심의회에 심의회 ① 위원회에 간사는 의 사무를 처리할 간 주민투표 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의 장으 로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공 요구를 받아 위원회

칙) 이 조례에서 규정 친 이 조례에 정한 한 사항 외에 심의회 것 외에 심의회의 운 의 운영에 필요한 사 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 쳐 의장이 정한다.

- 청구인대표자 증명 서 교부를 신청받---구인대표자 증명서를 ----- 다만, 법 제16조제2항과 같 <신 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지 18조제2항, 법 제10조제2 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 게시판·일간신문 중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	은	조	제	3항	에	따	른
-	증명	<u> 경서</u>	'n	2부	의	경	우
-	주 <u>'</u>	민투	丑	실시	1구	역	<u> </u>
-	확 2	정된	ļ	<u></u> 날부	·터	7	일
	၀]	<u> 게 에</u>	청	구역	<u>인</u> 대	丑	자
-	증대	<u>명서</u>	를	교	부한	다.	<u>.</u>
제2	202	조(공	- 丑	방법	등	-) -	
-							
-							
-							
-							
-							
-				제1	()조	4	항
-	및	법 :	제1	3조	제2	,항-	
-							
-							
-							
-							
-							

[별지 제5호서식] 서명조미스: [백지 제1호사신] 상대 2018. 7. 14> <u>자치구 및 통</u>(스템중 ○권)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주민투표의 원구 청구인서명부 서명기간: 전...월 일부터 전...월 일까지 서명유민슨: 명 QQ구 QQ왕() 핵 중 Q 원) 전성으면 - (ME 주민류비합의 최요나용을 요약한 축인류표학구라)을 - (ME 주민류비합의 최요나용을 요약한 축인류표학구라)을 가해면서, 세점류민습이 많은 경우에는 액티 필요로 분열하고, 수입자는 데리 관련로 세점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세한다. - 세점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세한다.

첫 구 이 서 명 보

변호	3B	생년월일	2.2	서명 또는 날인	사항 일자	8 1
\dashv	_	_				+
-		 				+

- (殊念.)됨 1. 번호환에는 서명 순서에 의하여 일반년호를 기재한다. 2. 성명원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한 무표님이 있는 의국인은 외국있동류표상의 성명을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7, 14.>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3	보라면	1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 [」]	립,제10조제	1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중명사			신청합니 일	다
				11	•		

- 1. 성명원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2재한다. 다만 투표장이 있는 오국인은 오국인등론표상의 성명을
- 2. 생년월일단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 5. 주소단에는 도로영화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롯번호 호수 또는 중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 재한다
-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뮤지를 기재한다.
- 4 청구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의 기재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청구인대표자 수 일 차 (서명 또는 날인

- 학생으로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조민투표청구당상을 기계하며, 선명주민 소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활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 임계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전국간 및 초(전품) 조(원) 타에는 포한 단체에 주민투표를 심시하는 경우에는 주민 투표가 설시되는 등 라반으로 작성한다.

청구인서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42	서 내명 또는	서명 일자	비고
_						

- 좌성요점
 1. 번호단에는 서점순서에 의하여 일반반호를 가져
 2. 생명단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가져,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성의 성명을 가져

- 생명을 가져 로 추소한에는 명국인의 경우 제품자를 가제 4. 세명 또는 날인만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결로 생명을 기계하거나 날인 5. 세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쟁된 경우에는 붉은산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바고면에 그 삭제임신을 가게

	청구인대표			
청구인	성명	- Ag	년월일	
대표자	주소	•	·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위치				
청구 이유				
F만투표실시구역 :		[]신청	[]필요없음	ŧ
변경 변경	<변경 사유>			

(서명 또는 날인) 천구의대 표자 귀하

- 의 작성으로 1. 생명반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가게, 다만 투표권이 있는 의국인은 의국인등록 표성의 생명을 가게 2. 축소만에는 <u>외국인의 경우 체류기를 가</u>제 2. 축소만에는 <u>외국인의 경우 체류기를 가</u>제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의으의 기적만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적하고 백 세토 작명 4. [기에는 해당되는 곳에 √도기 5. 주민투표실시구역연구단에는 서송병시 고방구적 후 크게 구. 후 또는 흥번에서만 유민료로 사용기보고 하는 회의적인 경우 신청하며, 폭쟁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 판매가 있는 사용을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주민무표의 청구 청구인서명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u>00구 00분</u>(이 책 중 이 권) 청구인대포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일 자 (서명 또는 날인)

- * 작성요령 1.(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다산을 기저하며, 선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본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 기에된다.
 2. 세명을 소행한 수입자가 다신이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3. ○그 ○○동○영 중 ○권! 안에는 통한 단웨에서 주민목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목표가 실시되는 동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보	정명	생년월일	A	서 명 토는 일 인	전명 일본	비교
_						
_						
_						

- * 작성으템
 1 번호란에는 서명순시에 의하여 일반번호를 기제.
 2 생명하는 동구인의 생명을 만으로 가지.
 1 변호란에는 유구인의 생명을 만으로 가지. 다만 투르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생명을 가게.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채류자를 가게.
 4 서명 또는 남인만에는 본인의을 식명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설명을 기계하거나 남인.
 5 서명자가 서명을 활화하거나, 무호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급을 그어 삭제하고 비교란에 그 상제일자를 가게.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기	작증명서 교부신	정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진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신청 []필요1	ilė.
	<변경 사유>		

서울특별시장 귀하

- · 작성요령 1. 성명단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동류표상의

- 1 생명단이는 장구난의 대장을 단하는 기가 생명을 가장 2 주소년자는 외국인의 경우 체우를 기재 2 주소년자는 외국인의 경우 체우부를 기재 3 분군대상 및 역기, 분구이상의 기재단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치로 작성 4. [이번 : 해당되는 것이 것도) 5 주민무료상다는 개혁명당라면는 사용독립시 관람구역 중 목행 구, 중 또는 동반에서만 유민목표를 실심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선생하며, 목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단에가 있는 사유를 작성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7. 14>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선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리간	선 월 일부터 선 월 일까지 * 제외기간: 선 월 일부터 선 월 일까지 제외지역:	_

위 사람은 "유민루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 듀프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원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학생으량
 1. 성정단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함글로 기재한다. 다만 목표장이 있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 2. 생년월일단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충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
- 제한다. 다만, 국내가소신고 제외국인의 영호에는 가주지, 외국인의 영호에는 제휴지를 기제한다. 4. 구인목표 청구소(단생)는 그민목표 청구의 대상과 즉위 및 이후의 구호 대응을 호박하여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7. 14.>

		서명	요청급	면 위임신	·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A) = 0(F) = -1	성명			생년	월일			
청구인대표자	주소			10		(X	화번호 :)
	성명		(2	서명 또는 날	(인)	생년1	일일	
	주소					(전	화번호 :)
401-1	기간	낸	읠	일부터	낸	offi	일까지	
수임자	성명		(2	네명 또는 날	(191	생년	일일	
	주소					(전	화번호)
1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병」제10조제3항과「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프로합」제(USCM) 장면 기급학들의 구인구도 스피크 기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작성요명 1. 주민투표청구요지만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한다. 2. 성명판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가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 기작간다. 3. 생선일일단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문특번호상 생선일일을 기적한다. 4. 구소단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반호, 호수 또는 중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
- 제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교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루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7. 14.>

		서명요청권 위임신	고중	ŀ	
주민투표 청구요지					
41 7 01 FT 7 W	성명	생년	월일		
청구인대표자	주소			(전호	·번호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1) 4	B년월일	
[주소			(전호	∤번호:
Antri	기간	년 월 일부터	3	선 월	일까지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약	1) 생	년월일	
Ī	주소			(전호	∤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 34	크 월	01201-0

「주민류표법」체103제했다 「서울됨별시 주민류표 조례」체6조제3했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선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 권이 있음을 중점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작성요령

- 으 성명단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종류표상의 성명
- 6 '사이트다'
 6 '사이트다'
 6 '사이트나 이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변호상 생년필일을 기재한다.
 4 '주소단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등 기.
- 제한다. 다만, 국내가소신교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루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류자를 기재한다. 5.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치로 작성한다.

	정-	구인 대표기	사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투표 청구요제					
서명요청기간			원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레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 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정할 권한이 있음을 궁명합니다.

년 월 일 0000% (91)

- 의정보도 1. 성명반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 성의 성명을 가져 2. <u>주소단에는 외국인의 경우 제품지를 기제</u> 3. <u>주민투교학구요지단에는 주민투교</u>학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년용을 요약하 여 기제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1
a olwi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	및 일까지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일까지	

주민투표별 제10요제3항과 <u>주민투표예관한 참고 조예안 제6호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확 같이 철근인대표적의 서명호형권을 취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번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 작성으로 나 주민투표한구요지반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 여 기계 소 성명만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계, 다만 투표절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계 3. <u>추소만에는 외국인의 경우 제휴지를 기제</u> 4. 수일자가 다꾸신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	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I TAIRITT	성명	생년·	별일		
청구인대포자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산	변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784	성명	(서명 또는 날인) Mg	변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항라 <u>주민투표에관한참고 자치법규안 제6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알 청군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중

년 월 일 OOO장 (연)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군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년융을 요약하여 기계
 2. 선명보다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계,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동목표상의 성명을 기계
 3. <u>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를 가제</u>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치료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두프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위 사람은 '주민투표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 루표청구권자의 서명을 모정할 권한이 있음을 공명합니다.

선 형 일

서울특별시장 (인)

- 2023보호
 1 생명단에는 청국인의 생명을 한글로 기계,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생명을 가여
 2 주소단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를 기제
 3 준민동료당조의한에는 축인동료청소의 대상곡 취지 및 이유의 주요대용을 오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경구인네휴산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A 01=1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1	일까지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0.	전화번호:				
	7171	년 월 일부터 년 1	일까지				

"주민주도법, 제102세3항의 "서울학생시 구민주요 조례, 제62세2항의 교생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로자의 서명으청광은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선 월....임

청구인대포자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작성으명 1. 휴대문표발군으였던에는 초민류표발군의 대상과 하지 및 이유의 휴요나용을 요약하여 기에 2. 생명받이는 청구인의 생명을 한글로 기계, 다만 투표관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문목표상의 생명을 기계 3. 주소만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투지를 기재 4. 수립자가 다수인 경우, 별치료 학생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	임신고	13		
주민투표 청구요지						
	성명		생년월	일		
1十世纪 年 年	주소				(전화	번호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	월일	
	주소		77		(전화	번호 :
수임자	기간	년 월 일부터	10	N	일까지	
787	성명	(서명 또	는 날인)	생년	월일	
	주소				(전화	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15	9	일까지	

[고민투교병], 제20조제3항화 <mark>[서울특별시 고민투표 조제], 제8조제2함</mark>의 규정에 위하실 위하 살 이 청구인대표하의 세명요형권의 위임사실을 선고하였으며, 수입민은 세명요형권이 있음을 등 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조건설로병
 조건호로부모소의단에는 존민부로보급의 다살과 취지 및 이웃의 주요년동을 요약하여 기재
 설명단에는 불구인의 설명을 한글로 기재, 다란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설명을 기재
 주요단시는 외국인의 경우 체휴지를 기재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치로 작성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7. 14.>

	주	민투표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차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천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청부 서류 : 관련 자료 작성보험 1. 성명단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후프린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문목표상의 성명을
- 기억인다. 2. 생선월일만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선일일을 기제한다. 3. 주소단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중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
- 제한다.
 다한 국민이스인교 제외국인의 정우에는 거유지, 외국인의 정우에는 제휴지를 가져한다.
 4 청구 대로 있 위해, 청구 이유의 기에만이 부족한 경우에는 호제한 기대한고 병치로 당성한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7. 14.>

11 41 61	성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세4명에 따라 위와 살이 비의를 산중합니다. 면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선을특별시장 귀하

- 현부 서류: 궁빙자료
 작성으량
 1. 성명단하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단 투표관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성의 성명을 기계하다.
- 기재한다. 2. 생년월일단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동목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단에는 도로탱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반호, 호수 또는 충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
- 전한다. 다만, 국내가소신교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류지를 기재한다. 4 대상단에는 구민무교청구위자의 주오 내용을 오막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주	민투표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진				
청구 이유				
청구 이유				

추민투표법 제9조제2합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화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루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 * SOCIOTE SOCIOTA SOE TIES 시에, 어떤 구독인에 있는 의미인인 의국인 등록보신의 성명을 기계된 기계 2 <u>주소단에는 외국인의 경우 제휴지를 기계</u> 3 첫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단이 부족한 경우에는 오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의성] 정서			
11 At at	성명		생년월	일		
선 형 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청위지						
신청사유						
	12조제 4항요	l 규정에 의하여 년	위와 같이 이오 형 일	나를 신청	합니다.	
	12 조제 4항요	년				

- 청보사료: 중빙자료
 처성으록
 성명단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주소단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제를 기재
 대상단에는 유민투표청구취시의 주소년동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청구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42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및 원진				
청구 이유				

『주민두프림』제3조제2학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겐 뭘.....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급하여차 : 단반기호 쪼쏘으명 1. 생명단하는 청구인의 생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도류보임 생명을 기재 2. 주소단하는 외국인의 경우 목휴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휴지, 청구이유의 기재단이 부족한 경우에는 오지만 기재하고 발제로 작업 발제로 작업

		이 의 신	청서		
	성명		생년	월일	
신 청 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청원지					
신청사유					
"주민투표법,	M122M488	내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뭐 의	이외를 선	방합니다.
		신청인		또는 날인)	
서울폭별시장 구	귀하				

- " 마까마" 중 하기요.

 장 작성으로
 1. 생명단에는 청구인의 생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원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생명을 기재
 2. 주소단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를 기재
 3. 대상단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오내용을 오약하여 기재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 중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를 "구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을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을 "따른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의"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 "각호에 관한"을 "각 호의"로, "위하여 서울특별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4. 전자투표 전자개표의 실시
- 5.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심의회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항에 따른"을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처리기간의"를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로 한다.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16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교부의 경우 주민투표실시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과 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옥외집회를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다.
-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 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성명			생님	¹ 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신청	[]필요입	었음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변경 시	ት ቶ>					
「주민투표법 다.	」 제10조	제1항의	리 규정에 의	비하여 청-	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	
		청	구인대표자		년 (서명 <u></u>	월 일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중 특정 구, 동 또는 통·반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일부터 년 월 년 월 일부터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경기한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	거명 또	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たの d	기간	년	월	일부I	키	년	월	일까지		
수임자	성명			(서	명 또는	들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I	키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	요 ^{>}	청권 의	위임신	[고취	<u> </u>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팀	번호:)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는 날인)		생년	월일		
	주소							(전화병	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1)	생년월일				
	주소							(전화팀	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구인서명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구 ○○동(○ 책 중 ○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 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 3. ○○구 ○○동(○책 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 의 성명을 기재
-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ય જ ાં	주소			(전화번호:)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 첨부서류:증빙자료
- ※ 작성요령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시장은「주민투표법」(이하	(4)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	 외국인-
<u>민 또는 외국인</u> 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	
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	
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	
특별시(이하"시"라 한다)에 주	
소를 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
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	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u>라</u>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u>자</u>	<u> </u>
<u>는</u> 주민투표권이 있다.	국인은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삭제〉
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	
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	
<u>와 같다.</u>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	
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 요결정사항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 제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② 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으로 <u>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u> <u>식에 따라</u> 작성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 성) ①
<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u>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u>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
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u>본다.</u>
<u>1. 성명</u>
<u>2. 생년월일</u>
<u>3. 주소 또는 체류지</u>
4. 서명 연월일
<u> </u>
<u>구분하여</u>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사본을 자치구별로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u>시장</u> 은 다음 <u>각호에 관한</u> 사항을 심 의·의결하기 <u>위하여 서울특별</u>

	의하여 통ㆍ반 단위에서 수민투
	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
	<u>람장소</u>
	<u>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u>
	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u>말한다)</u>
	②
	<u>경우에만 원본</u>
-	의 해당부분만
	③ (현행과 같음)
	4
	<u>따른 청구인서명</u>
-	<u>부 또는 그 사본의</u>
제	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시장--- 각 호의 -----

- 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 2.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신 설>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 는 사항

<신 설>

<신 설>

- 청구심의회----.
- 1.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 서명의 확인
 - 3. ----- 심사
- 4.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5. ----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 ② 심의회 의장은 행정1부시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 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 원
-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 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 있다. 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 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 람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 사,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 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 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 다.

제14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제14조 (심의회 운영) ① 법 제12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 이 소집한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④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 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u><</u>신 설>

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 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 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에 의장이 소집한다.

> 4·5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 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 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 설>

제15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제17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 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 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 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 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교부의 경우 주민 투표실시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 서를 교부한다.

② <u>같</u>
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③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 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할 수 있다.

조에 따라 주민은 주민투표운동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까지의 옥 외집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 시까지의 호별방문
- 2.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 시까지의 옥외집회(공개장소 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 회를 말한다)

<신 설>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 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 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과 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옥외집회를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신 설>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 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삭 제>

제17조 (주민투표청구서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서 및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 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4호서 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 및 이의신 청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공표ㆍ공고 방법) 법 제8 | <삭 제> 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 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 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ㆍ게시판 •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 넷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 으로 한다.

<신 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 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 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 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 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신·구 별지서식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
	<u> </u>
	선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선명주민수: 명
[별지 제1호선식] <개정 2018. 7, 14>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OC구 OO용(이 책 등 이 권)
() 주인투표의 청구	
청구인서 명부	
서명기강: 1년 월 일부터 1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A solded (18 - 19 19)
○구 ○동○ 핵 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 졌성요정	
- (이는 중인투표청구의 중요내용용 요약한 주인투표청구대상용 기체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핵과 권으로 본접하고, 수입자는 핵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제한다. 청.구.인.서.명 부	* 작성요명 1.()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설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구 ○○동(○책 중 ○권) 단에는 통한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作 재보요됨 1. 변호함에는 전략 순석에 의하여 일반변호를 기재한다. 1. 변호함에는 전략 순석에 의하여 일반변호를 기재한다. 1. 변호함에는 전략 순석에 의하여 일반변호를 기재한다.	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대명 또는 성명 비고
# 여도보였는 시청 소시에 교하여 일반인통을 기재한다. 2. 보험되는 시청 소시에 교하여 의학인보통을 기재한다. 3. 제생별 함전에 의학인의 경우에는 의중인도 문화로 기재한다. 4. 소설하에는 모르며과 건물인호까지 먹고 사세주실되었고 모수 모든 축수가 있는 것은 자세주실 함께한다. 1. 다양 그렇게 조성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기중인 의국인의 청우에는 제국자를 기재한다. 1. 대형 그는 발생들에는 본인을 수 일반을 수 있도록 자리를 생명을 기재한다. 3. 세명자가 사형을 참고하자나 고르인 사명으로 환경한 경우에는 불은 선으로 두 등을 그어 삭제하고, 비교단에 그 식세 일자를 기재한다.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성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청구인의 경우 체류자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호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무골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7. 14.>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변호	.=)		
	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작성요련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충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 대하다.
-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 4. 청구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7. 14.>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4	년월일			
주 杰		315	35	(전화번	<u> </u>	90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 제외기간 : 제외지역 :	일부터 년 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 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중명합니다.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작성요령

- 1. 성명단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 2. 생년일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일일을 기재한다.
-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반호, 호수 또는 충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 재한다.
-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	자증명서 교부신	청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댔상및 취진				
청구 이유				
700-1100-0	40	[]신청 []필요양	1 <u>=</u>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작성요령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서울특별시 관찰구역 중 특정 구, 동 또는 통반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규요진				
서명요청기간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까지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선 위와 같이 주민 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작성 요령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아 혀 행 개 정

【 별지 제4호서식 】 <개정 2016. 7. 14.>

		서명요청권 위임신고	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A17 0151 - 51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Ī	주소	-9!	(전화번호 :)
5 OI=1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Ī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작성요력

-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 기억한다. 3. 생겨일일단에 의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론특번호상 생선일일을 기제한다. 4. 주소단에는 도로백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용번호 호수 또는 충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 재한다
- 대단: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 별지 제5호서식 】 <개정 2016. 7. 14 >

		서명의	2청	면 우	임신고	₹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전호	·번호 :
	성명		(4)	명 또	는 날인)	생년	월일	
- 8	주소						(전호	·번호 :
AOITL	기간	년	월	일부	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 -	성명		(서	명 또	는 날인)	생년	월일	
	주소				7/7.		(전호	·번호:
	기간	년	월	일부	E†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 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21)

-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 을 기재한다.
- 3. 생년일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일일을 기재한다.
-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충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 재한다
-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서명	요청	권 위	임신고서	ĺ		
주민투표 청구요지							20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Ŋ.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줼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선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면 뭘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작성요령

-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ľ	서명요청권	· 위임신고	등		
주민투프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1		
	주소				(전화)	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			월일	:2
	주소		,		(전화)	번호: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	명 또는 날인)	생년	월일	
	22.70				(전화)	He:
	주소				(24)	U-4- '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중 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개 정 아 혀 행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2016. 7. 14> 주민투표청구서 주민투표청구서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주소 대표자 本本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청구의 대상 및 취직 청구 이유 원구 이오 「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 서류 : 관련 자료 * 작성요령 ※ 첨부서류 : 관련자료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 작성요령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충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재한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별지로 작성 4 청구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 【 별지 제7호서식 】 <개정 2016. 7. 14.>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시 청 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 청 인 (전화번호 상 신청취지 신청취지 신청 사유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장 귀하 침부 서류 : 증빙자료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작(점보장) 성명단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 작성 Q.명 2. 생년일일단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일일을 가재한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충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4. 대상단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